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24 선고 2020가단7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 당사자)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1. 3. 3

판결선 고 2021. 3. 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 고들에 대 한 청 구를 모두 기 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선택적 병합).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라 하고,원 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 등'이라 한다]은 E의 자녀들이다.

피고 C는 E의 여동생 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E는 2019. 11. 29. 사망하였다(이하 묘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과 피고들은 2009. 10.경부터 한 집에 살거나 바로 옆 집에 거주하였다.

그 무렵부터 망인은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2014.경 망인의 노인성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피고 C가 2014. 6. 12.경 망인의 보호자로 망인을 F요양센터에 입소시켰다.

다. 망인 명의로 2013 . 3. 19. 가입된 월 50만 원 납입 정기적금이 2013 . 11. 14. 해약되었고,당일 망인 명의의 통장에서 3,511,970원이 인출되었다.

라. 망인 명의로 가입된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일반형),무배당 에버리치복지보험(일반형), 무배당 에버리치복지보험(생계형)이 2016. 5. 21. 각 만기가 됨에 따라 2016. 5. 23.

대구내당1동우체국에서 총 56,203,270원이 지급되었다.

그 중 55,000,000원은 수표로 지급되었는데,그 수표는 지급된 다음날인 2016. 5. 24. 피고 C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내지 6호증,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동의 없이 2013. 11. 14. 망인의 돈 3,511,970원을 인출하고, 2016.5. 23.

망인의 돈 56,203,270원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 위를 하였고,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게 선택적으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법 정상속분에 해당하 는각 1/ 3인 20, 000, 000원1) 및 이에 대한 2016 .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있다.

3. 판단

가. 3,511,970원 부분

기초사실에 의하면,당시는 망인의 치매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전임을 알 수 있으므로 2013.

11.경 망인의 예금 등 재산을 피고 C가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갑 제3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 고들이 2013.

11. 15. 망인의 돈 3,511,970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56,203,270원 부분

1)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24. 선고 2017다37324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C, 망인,망인이 입소한 위

요양원 원장인 G이 같이 2016. 5. 23. 대구내당1동우체국을 방문하여 망인이 직접 위 우체국 직원

앞에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만기된 각 보험 에 따른 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피고들이 망인의 관여 없이 직접 망인의 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당시 망인이 피고 C에 게 위 인출된 돈을 교부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 C가

우체국 직원으 로부터 위 돈을 직접 수령하였어도 이는 망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과 동일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원고는 당시 망인이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돈을 교부하면서 한 증여의 의사표시(피고 C가 위 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할 당시의 망인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7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6. 5. 23. 위 요양원 대표 G와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여 그 직원 앞에서 직접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그 당시 인지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회복할 때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사실과 위 거시 증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과 피고들의 관계까지 감안하면, 망인은 위 2016. 5. 23. 우체국에 방문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의 동의 없이 망인의 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차윤제

별지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하였다.